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지원계획 공고

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도전적·혁신적 R&D를 뒷받침하고자, R&D 지원을 통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개요

□ 지원목적

- 역량, 의지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임무(미션) 중심 R&D 프로젝트 추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주관으로, 투자기관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프로젝트팀’
 - * 연구기관 범위는 [붙임3]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참조
- 글로벌 R&D 협력*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등의 컨소시엄 참여 필수
- * 「World-Frontier」급 기술개발을 위해 해외 선도기관과 R&D 협력이 가능한 기관의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글로벌 R&D 협력을 촉진

□ 지원조건

- 신청 RFP의 최초 게시일 이후, 투자기관으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확약 포함) 받은 중소기업이 투자기관 등과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신청·접수

< 투자기관 및 투자유형은 공고에 명시된 기관·유형만 허용 >

< 투자인정 기관 >

① 벤처투자회사,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벤처투자조합, ④ 신기술투자조합

< 투자 유형 >

투자방식	개 념
신주발행(보통주, 우선주)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신권발행(CB, BW)	신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2. 세부 지원계획

□ RFP 목록 : 전략기술 Bank(www.scaleuptips.or.kr/page/dcp-bank)에 게시된 RFP 확인

□ 선정규모 : 20개 이내(2025년)

* 신청 프로젝트팀의 자격요건이 미달하는 경우, 최종 선정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출연R&D : 수행기업당 최대 3년(36개월), 36억원

* 주관기관의 연도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60% 이상이 되도록 편성

○ 지분투자(모태펀드) : 수행기업당 최대 40억원 이내

- 사전에 설정한 R&D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투자기관으로부터 10억원 이상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투자에 매칭하여 최대 2배수(최대 40억원) 지분 투자

- 지분투자는 투자기관이 투자하는 방식과 동일 투자 방식으로 진행

- 지분투자 시기 : 투자기관의 후속투자와 동일 라운드로 투자 원칙

* 수행기업 조건 달성 시, 한국벤처투자가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절차

구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출연 R&D	① 선정평가 ↓	전문기관	· 사업계획서 검토/대면평가
	② 협약체결 ↓	전문기관	· 기정원-선정기업 등 간 협약
	③ R&D 수행 ↓	프로젝트팀	· 연구개발수행 및 R&D 전주기 지원
	④ 사업수행 점검 ↓	전문기관	· R&D, 후속투자, 진도점검 등
지분 투자	⑤ 마일스톤 달성 평가 ↓	전문기관 등	· 성과 평가, 후속투자 조건 확인 등
	⑥ 지분투자 ↓	한국벤처투자	· 현장실사, 투자심사위원회 등
-	⑦ 최종평가 등 사후관리	전문기관 등	· 최종 평가, 투자회수 관리

□ 연구개발비(출연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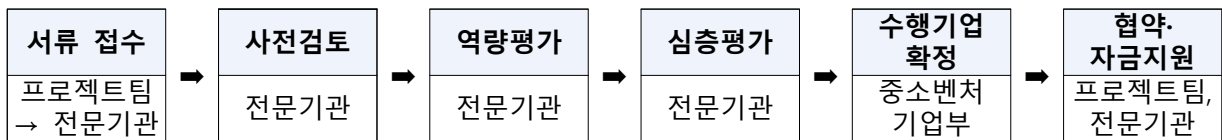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 채용일부터 기업 지원계획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
 -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며, 직접비(현물포함) 협약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IP-R&D 지원비용) IP-R&D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가능

□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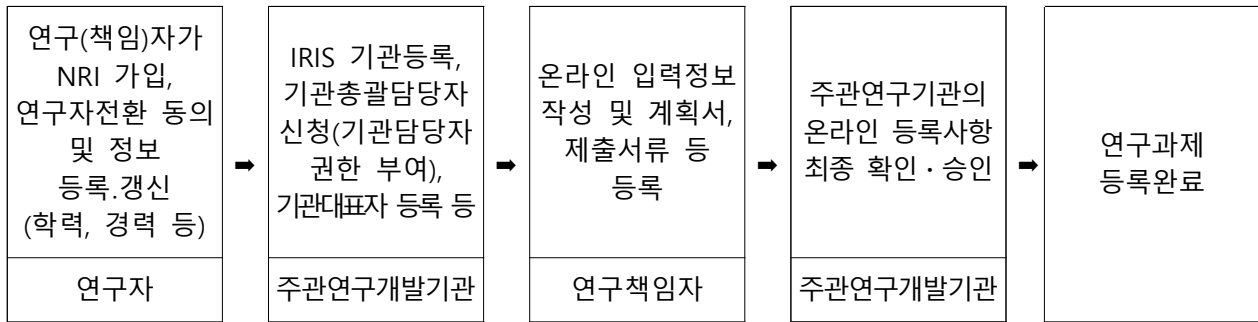


* (주관연구개발기관) 프로젝트팀의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프로젝트팀 신청·접수

- (신청기간) 신청하고자 하는 RFP가 전략기술 Bank에 게시된 이후부터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신청조건) 신청하고자 하는 RFP의 게시일 이후, 투자기관으로부터 20억 이상 투자유치(투자 협약 포함)
- (신청방법) 전략기술 Bank*에 게시된 RFP에 대해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 * [붙임1]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전략기술 Bank
- ** [붙임2]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신청서류(p.15) ①~⑨ 해당
- (제한사항) 프로젝트팀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참여기관(중소기업)은 RFP 1개에 대해 2회에 한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프로젝트팀이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제안 내용을 온라인 입력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 지원 방법 상세: IRIS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홈페이지 Quick menu에서 R&D 업무포털 클릭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정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선택 → 사업년도 : 2025년 선택 후 검색 클릭 → 사업공고명(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공고) 우측 '접수' 클릭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최종확인 → 제출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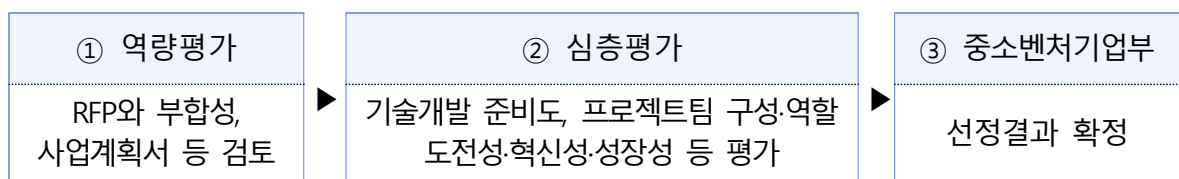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제외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붙임3]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신청제한 및 유의사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 해약)로 처리

○ 수행기업 평가 절차 및 방법

- 역량평가, 심층평가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 확정
- 역량평가 및 심층평가는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성장전략서를 기반으로 발표내용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 가.감점은 적용하지 않으며, 프로젝트팀 구성·역할, 프로젝트 수행역량, 기업성장전략, 혁신성, 도전성 중심으로 평가



** 평가 일정은 과제 접수 및 사전검토 완료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대상 별도 통보 예정

< 주요 평가 내용 >

구분		평가항목
① 연구개발 계획서	기술성 및 개발역량	▸ 개발목표 및 추진체계 전략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 연구책임자 및 연구조직 역량과 향후 확보 방안
		▸ 임무(미션) 제시 및 달성 가능성
	경제성 및 사업성	▸ 수요자의 적정성 및 개발품목 적용 계획
		▸ 기술의 선점성(선도가능성 등) 및 파급효과
▸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 효과		
② 기업성장 전략서	성장 및 시장 확대 전략	▸ 보유 핵심기술의 기술혁신 기반 및 기술수준
		▸ 원천기술 확보 및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 사업화·투자 추진전략의 적정성
	경영 및 고용 전략	▸ 대표자 및 기술인력 역량 등
		▸ 사업화 역량 보유 및 수준
		▸ 글로벌 시장진입 및 확장 전략
③ 프로젝트팀	팀구성 및 역할	▸ 프로젝트 팀구성의 적절성 및 수행 역량
		▸ 글로벌 진출 지원 계획의 타당성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 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보안등급 분류**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 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4] 참고

3. 사업설명회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설명회

- (일시) '25. 5. 19.(월), 14:00 ~ 16:00
- (장소) 역삼 탑스타운(S1) B1F 탑스홀
- (내용) '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기업 지원계획 설명

4. 문의처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내용	기관명	연락처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R&D평가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2280-0423, 0428
민간투자 조건, 신청 조건 확인 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3017-7074, 7075, 7077, 7080, 7081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tipa.or.kr/>
- 전략기술 Bank 홈페이지 : <https://www.scaleuptips.or.kr/page/dcp-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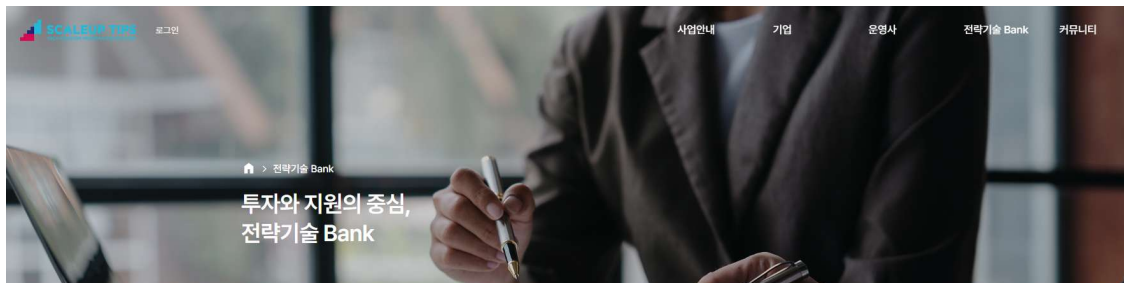
□ 개요

- 투자유치 계획 수립 등 도전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 Bank'를 도입, 목록을 상시공개
 - 발굴·기획된 프로젝트는 '전략기술 Bank'에 게시하여, 1년 내외의 유효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술·시장·기업의 상황을 반영하여 갱신
 - 상시 접수 및 프로젝트 단위별 평가하여 지원

□ 추진방안

- 사업 공고 및 RFP를 '전략기술 Bank'에 게시 이후 연말까지 상시적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된 기업은 매월 평가하여 프로젝트팀 선정
 - 신청 접수된 과제는 '전략기술 Bank'에 현황을 표시하고, 접수 및 평가 절차 진행현황 공개
- ※ 상시 게시 및 접수 체계이므로 기업은 '전략기술 Bank'에서 신청 희망 RFP 접수마감 여부 실시간 확인 요망
- 동 사업의 RFP 기획 시, '전략기술 Bank'에 추가 게시하며, 수행기업 선정이 완료 시 '전략기술 Bank'에서 RFP 제외

< 전략기술 Bank 홈페이지(<https://www.scaleuptips.or.kr/page/dcp-bank>) >



전략기술 Bank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투자 기회 소개해 드립니다.

0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 검색어 입력

□ 신청서류 목록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기관
①	(요약문)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X	X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연구개발계획서	○	X	X
	* 향후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개발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X	X
	* 페이지 수 제한 없음	○	X	X
②	(병합문서)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X	X
③	기업성장전략서	○	X	X
④	투자계약서(또는 투자확약서) *확약기업의 경우 투자(예정) 확약서 우선제출 후 투자계약서 제출	○	X	X
⑤	투자현황 요약표	○	X	X
⑥	개인정보·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	○
⑦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	X
⑧	법인등기부등본(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 말소사항 포함)	○	○	○
⑨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	X
⑩	중소기업 확인서	○	해당시	해당시
⑪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X	X
⑫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X	X
⑬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	○
⑭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	○	○	○
⑮	정보제공·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	○	○
⑯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X	X
⑰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	X	X
⑱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계획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⑲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⑳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㉑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1억원 이상)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㉒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외기관)	X	해당시	해당시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참여 연구기관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

②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既) 개발/기(既)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은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증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㉓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㉔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관련 문의처 >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시까지 가능]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⑧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유의사항**

- ①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연구개발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내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및 졸업제를 적용하지 않음
-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②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음
-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 3책5공 제도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 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③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 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작성하여야 함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 시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에 작성해야 할 부분 ※ 시스템 입력사항

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 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 ¹⁾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 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 및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함

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 체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투자 절차(투자금 입금 등)가 완료되어야 함

* 기간 내 투자절차 미이행 시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적용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② R&D 졸업제 : 최대 5회까지만(단, 최근 7년간 3회까지(최근 7년의 시작연도는 '20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5회 이상(단, 최근 7년 간 3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수행 횟수는 `20년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을 한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 함

③ 과제 수행 횟수 산정 시 `20년부터 `23년까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한 경우만 산정하고, `24년부터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산정 대상으로 함(단, 공고 당시

졸업제 예외로 명시한 과제는 산정 과제 수에서 제외 함)

- * `20년부터 `23년까지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및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 강소기업100+과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과제, 소부장 함께달리기 과제, 스케일업 팀스(출연R&D)), 그린벤처프로그램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및 전략형(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연계, 백신원부자재) 과제 등 공고 당시 졸업제 예외로 명시한 과제는 산정 과제 수에서 제외

④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적용을 달리 함

-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과제 및 스케일업 팀스 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TIPS 과제 및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과제,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로 계상하지 않음
-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정공모과제 단위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컨소시엄형 과제에서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계별로 연계 지원한 2개의 과제는 그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단, 세부과제 또는 단계별 연계 지원을 통해 수행한 과제 수가 1개인 경우에도 1개로 산정)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경쟁형 과제, 산학연 Collabo R&D 과제 및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과제 등 단계형 지원 과제(1단계 → 2단계)를 2단계 까지 수행한 경우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단, 1단계 과제 수행 중에는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계상하고, 2단계 과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선정평가 탈락이 확정된 경우 1단계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에서 제외)

< 졸업제 사업 수행 횟수별 단계형 사업 신청 및 수행 가능 여부 >

졸업제 과제 수행 횟수(최근 7년)	단계형 지원사업 신청 가능 여부	1단계 과제 수행 중 다른 졸업제 사업	2단계 탈락시 다른 졸업제 사업
3회	신청 불가	신청 불가	신청 불가
2회	신청 가능	신청 불가	1개 가능
1회	신청 가능	1개 가능	2개 가능

- `19년, `20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정기간 중에 있는 기업(강소기업에서 졸업 및 지정취소된 기업은 제외)이 수행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로 계상하지 않음

⑤ `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한다. (단,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 가능하며,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는 아래 표를 참조)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 대상은 `25년부터 협약하는 과제들로 하며, 기술개발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수행 중인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정공모과제 단위로 수행하는 2개의 세부과제와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컨소시엄형 과제에서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수를 1개로 산정

<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 >

`25년이후 신규로 협약하여 수행 중인 과제 수	추가 수행 가능 과제 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예외 사업
0개	1개 가능	2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1개 (졸업제 적용 사업)	수행 불가	1개 가능
1개 (졸업제 예외 사업)	1개 가능	1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 ⑥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 '24년 「청년고용 친화형 R&D 패키지」 세부지침 가이드에 따라 변동 가능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 채용해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② 청년인력 채용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 (既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
2.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평가위원회 참여자
4. 기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안규정을 마련하였을 경우 해당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여부를 재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과제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연구기관보안대책”이라 한다.)으로써 별표1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따르도록 한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연구보안책임자 지정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제5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연구보안책임자의 지정절차·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내에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변경(연구보안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개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8.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8조(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2.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3.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서약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 연구자와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등)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 등(본사와 지사의 소재가 다를 때에는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장소·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보안심의회 심의를 거쳐 현재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제10조(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등) ① 보안과제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승인하려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연구보안심의회는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었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안과제에서 외국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약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또한 참여 외국인의 신상 및 과제 참여 범위, 과제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 등의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등급 표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등급의 구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다.

1. I 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 II 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III 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12조(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요령 제45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실태 점검을 계획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2.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요령 제45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때에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안사고 경위 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

1.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
2.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3. 조사반 구성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 과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운영요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보안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4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한다.

제16조(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① 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제4조부터 제16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 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 이 대책은 혁신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1호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제4조 및 제12조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소기업부처기업부장관에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9조와 제10조, 제14조, 제16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대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안과제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관련 보안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 제9조 및 제10조, 제15조의 사무를 보안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해 과제의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며, 제13조, 제14조, 제16조까지의 사무는 필요시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요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으로서 제4조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부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의 관리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전문기관에 두어 운영한다.

제19조 (재검토기한) 중소기업부처기업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5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 가.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운영 방법, 심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나. 제17조 비공개연구성과에 보안대책 (보안대책 적용의 범위)
- 다. 연구개발기관 내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연구보안 책임자 지정, 연구보안책임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 라. 보안 우수자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기준
- 마.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
- 바. 소속 직원의 보안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사항

※.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우대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과 연구성과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기술 판정 필요성과 후속조치 등

- 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실시에 대한 사항

2. 보안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관리

- 가. 참여연구자의 연구기관보안대책 위반 시 징계에 관한 사항
- 나. 퇴직하였거나 퇴직 예정인 자가 반출 또는 반출 예정인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다. 참여연구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라. 보안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자의 외국 정부·기관·단체 접촉시 보고 및 외국 정부·기관·단체와의 연구 승인 등에 관련된 절차 및 형식 등 제반사항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 가. 보안등급 표기가 필요한 문서 및 데이터의 종류
- 나.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공개 및 제공 시 사전신고 등 확인절차

4. 연구시설 관리

- 가. 보안과제 수행에 사용된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출입 절차

- 나. 연구개발기관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 장비 등의 설치·운영
- 다.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라. 연구실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입권한 차등화의 방법·기준, 출입현황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마. 외부인 및 외부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보안과제 관련 연구시설의 내부 출입통제 조치에 관련된 사항
- 바.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

5. 정보통신망 관리

- 가.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 1)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보안장비의 설치·운영
 - 2) 연구개발기관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3)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4) 정보시스템 사용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나. 보안과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강화된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 1)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2) 내부망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3) 정보통신 매체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외부 자료 전송 시 사전신고 등 보안조치
 - 4) 비인가 정보통신매체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 5) 정보통신매체 폐기 및 외부 이관시 보안조치에 관련된 사항
 - 6) 직책 및 업무에 따른 각종 전자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이 필요시 추가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연구개발기관용) - 예시

본인은 “_____”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해 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개발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 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00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명 : _____ (인)

20

○○○ 귀하
